< 변 경 대 비 표 >

- 1. 변경 대상 투자신탁 : 키움현대차그룹과함께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20.11.24.
- 3. 주요 변경 사항 :
 - 펀드 명칭 변경
 (키움현대차그룹과함께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키움차세대모빌리티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환매수수료 삭제
 - Class C-P2(퇴직연금), Class C-P2e(퇴직연금). Class S-P, Class S-P2(퇴직연금) 신설

4. 변경사항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 <u>현대차 그룹과 함께</u>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키움 <u>차세대모빌리티</u> 증권 자투자신탁 제1 호[주식]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 신탁의 명칭은 " 키움 현대차 그룹과 함께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이라 한다.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략) < <u>신설</u> >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근로자
	<u><신설></u> <u><신설></u>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 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15. Class C-P2e(퇴직연금) 수익증권: 판매 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 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16. Class S-P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 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 <u>신설></u> 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 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7.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집합투 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키움 <u>현대차그룹플러스</u>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15. Class S-P 수익증권 16. Class S-P 수익증권 17.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키움 현대차그룹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키움 <u>차세대모빌리티</u> 증권 모투자신탁[주
제39조(투자신탁보수)	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 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 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 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u><신설></u>	16. Class S-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7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신설>	<u>0.2</u> 17.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u> </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6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제40조(판매수수료)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
	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	
	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 금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 (생략)	
	,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
		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Class C1 수익증권,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C-
		W 수익증권, Class S 수익증권, Class C-P 수
	익증권, Class C-Pe 수익증권: 없음 	익증권, Class C-Pe 수익증권, Class C-P2(퇴
		직연금) 수익증권, Class C-P2e(퇴직연금) 수
		<u>익증권, Class S-P 수익증권, Class S-P2(퇴</u> 직연금) 수익증권: 없음
제41조(환매수수료)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u><삭제></u>
	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	
	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	
	권의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한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	
	급(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	
	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A1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	
	Class C1 수익증권,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S 수익증권,	
	Class AG 수익증권	

	가~나. (생략) 2. Class C-P 수익증권, Class C-Pe 수익증권: 없음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저축약관" (Class C-P 수익증권, Class C-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들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 증권저축약관" (Class C-P 수익증권, Class C-P 수익증권, Class C-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 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신탁계약과 수익증권저축약관(Class C-P 수익증권, Class C-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을 우선한다.	증권저축약관" (Class C-P 수익증권, Class C-Pe 수익증권 및 Class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신탁계약과 수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1 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0 0 L	0 0 Т	
<u> </u>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 <u>현대차 그룹과 함께</u> 증권 자투자신	키움 <mark>차세대 모빌리티</mark> 증권 자투자신탁	
	탁 제1호[주식]	제1호[주식]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	<u><신설></u>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	
드코드		<u>직연금))</u>	
	<u><신설></u>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	
		<u>직연금))</u>	
	<u><신설></u>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u><신설></u>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	
		P2(퇴직연금))	
요약정보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 <mark>현대차 그룹과 함께</mark> 증권 자투자신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자투자신탁	
	탁 제1호[주식]	제1호[주식]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	
	는 '키움 <u>현대차 그룹 플러스</u> 증권 모투	는 '키움 <mark>차세대 모빌리티</mark> 증권 모투자신	
	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주요투자위험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	

	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있습니다.	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환매수수료	· Class A1, C1, C2, C3, C4, C-e, C-F, C-	해당사항 없음
	W, A-e, S, AG: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 Class C-P, C-Pe: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u><신설></u>	-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
		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u>입니다.</u>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	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키움 <u>현대차 그룹과 함께</u> 증권 자투자신	키움 <u>차세대 모빌리티</u> 증권 자투자신탁
	탁 제1호[주식]	제1호[주식]
	<신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
		직연금))
	<신설>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
		직연금))
	<신설>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u></u> <신설>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
		P2(퇴직연금))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 ├ 사항	<u> </u>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키움 현대차 그룹과 함께 증권 자투자신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자투자신탁
1. 8817111 00	기품 <u>현대자 그룹과 함께</u> ㅎ면 지구자인 탁 제1호[주식]	기품 <u>자세대 모르다다</u> ㅎ면 지구자한학 제1호[주식]
	<u><신설></u>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
	ALM	
	<u><신설></u>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
	1144.	<u>직연금))</u>
	<u><신설></u>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u><신설></u>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
		<u>P2(퇴직연금))</u>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펀드 명칭 변경(키움현대차그룹과함께	- 펀드 명칭 변경(키움현대차그룹과함께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키움차세대모빌리티증권자투자신탁제1	→키움차세대모빌리티증권자투자신탁제1
	호[주식])	호[주식])
	· · · · · · · · · · · · · · · · · · ·	

	- Class C-P2(퇴직연금), Class C-P2e(퇴직	- 환매수수료 삭제
	연금). Class S-P, Class S-P2(퇴직연금) 신	- Class C-P2(퇴직연금), Class C-P2e(퇴직
	설	연금). Class S-P, Class S-P2(퇴직연금) 신
		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	-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항		
0 1)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키움 현대차 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타[주식]	[주식]
및 형태	11	기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자투자신탁
	탁 제1호[주식]	제1호[주식]
	< <u>신설</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
		직연금))
	<신설>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
		직연금))
	<신설>	
	<u> </u>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
		P2(퇴직연금))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신설>	-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2) 종류형 구조	SEE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
2) 8 # 8 1 =		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키움 현대차 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
3) 모자형 구조	다음 <u>근데에 크립 글리드</u> 8년 모두에는 탁[주식]	[주식]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		
기		하는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
		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
	지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
상	탁[주식]	[주식]
1) 투자대상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		
자 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	①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	①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
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1)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90% 이상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	
	드 :: 'IOO' :: 'IOO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		
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신탁[주식]	타[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에 대한 전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에 대한 전
		망 및 국내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채권, 집합투자증권, 어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투자합니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현대차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주식인 현대차그룹 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채권, 집합투자증권, 어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투자합니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현대차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주식인 현대차그룹 주에 투자할 예정이며, 그 외 비중은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를 통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초과성과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1) 일반위험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 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 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 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 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 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 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 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 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 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1) 매입나. 종류별 가입자격	<u><신설></u> < <u>신설></u>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조,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
	<u><신설></u>	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Class A1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
2) 환매	Class C1 수익증권, Class C2 수익증권,	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다. 환매수수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S 수익증권,	
	Class AG 수익증권:	
	-3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Class C-P 수익증권, Class C-Pe 수익증	
	권: 없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	[변경전1]	[변경후1]
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변경전2]	[변경후2]
관한 사항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2) 과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	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항		
4)운용자산규모		

[간이투자설명서]

	_, _, _,			
항 목	정 정 전 정 후			
요약정보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 <u>현대차 그룹과 함께</u> 증권 자투자신	키움 <mark>차세대 모빌리티</mark> 증권 자투자신탁		
	탁 제1호[주식]	제1호[주식]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		
	는 '키움 <u>현대차 그룹 플러스</u> 증권 모투	는 '키움 <mark>차세대 모빌리티</mark> 증권 모투자신		
	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주요투자위험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		
	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	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		
	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	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		
	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	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		
	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u>또한 환매수수료</u>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 Class A1, C1, C2, C3, C4, C-e, C-F, C-	해당사항 없음
	W, A-e, S, AG: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 Class C-P, C-Pe: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신설>	-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
		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변경전1]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	리) 구자자에게 직접 구파되는 구구묘 클래스				
는— (종류)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A A 7 (1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매입시	
	카이케를 어요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전환수수료	-	전환시	
(\tilde{\chi})		환매수수료	<u>30일 미만 이익금의 70%</u>	환매시	
		근게 1 표	<u>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u>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오프라인-보수	가입제한 없음	전환수수료	-	전환시	
체감 (C1)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u>	 환매시	
			<u>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u>		
		선취판매수수료	_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Class C1 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_	환매시	
오프라인-보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전환수수료	_	전환시	
체감 (C2)	투자자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u>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u>		
	Class C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_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후취판매수수료	_	환매시	
오프라인-보수 체감 (C3)		전환수수료	-	전환시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시원교레스스크	<u>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u>	Ell Ol Al	
		선취판매수수료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Class C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 년 이상인 투자자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시	
오프라인-보수 체감 (C4)		전환수수료	-	전환시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u>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u>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e)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 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전환수수료	-	전환시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u>	-1-11	
		환매수수료	<u>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u>	환매시	
수수료미징구-	주 4) 참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오프라인-기관		후취판매수수료	_	환매시
(C-F)		전환수수료	_	전환시
		-1-U A A -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1-11-1
		환매수수료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	_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1-11-1-1-1-1-1-1-1-1-1-1-1-1-1-1-1-1-1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오프라인-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전환수수료	-	전환시
(C-M)	게되를 포유한 사	-1-11 4 4 -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1-11-1
		환매수수료	<u>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u>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이내	매입시
 수수료선취-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	후취판매수수료	_	환매시
구구표전위- 온라인 (A-e)	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전환수수료	_	전환시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환매수수료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u>	환매시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수수료후취-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 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	후취판매수수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 내	환매시
온라인슈퍼	외합니다.)가 개설한 온라	 전환수수료		전화시
(S)	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징구)	시원교레스스크	<u> </u>	- II O I I I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선취판매수수료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시
오프라인-개인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판	전환수수료	_	전환시
연금 (C-P)	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	환매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5% 이내	매입시
 수수료선취-오	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프라인-무권유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전환수수료	-	전환시
저비용 (AG)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환매수수료	<u>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u>	환매시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	선취판매수수료	_	매입시
	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_	환매시
	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전환수수료	_	전환시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금 (C-Pe)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환매수수료	_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			
	는 수익증권)			

-/ DB 1 1 1 1	2) 집집구시기구에 구파되는 모구 윷 미등									
		지급비율 (연간, %)								
클래스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 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 수 · 비용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 라인 (A1)	0.7000	0.9800	0.0300	0.0200	1.7300	1.3700	0.0049	1.7349	1.7349	0.2115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보수체감 (C1)	0.7000	1.5000	0.0300	0.0200	2.2500	1.5800	0.0032	2.2532	2.2532	0.2562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보수체감 (C2)	0.7000	1.3500	0.0300	0.0200	2.1000	1.5800	0.0000	2.1000	2.1000	0.2130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보수체감 (C3)	0.7000	0.9900	0.0300	0.0200	1.7400	1.5800	0.0000	1.7400	1.7400	0.2233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보수체감 (C4)	0.7000	0.8900	0.0300	0.0200	1.6400	1.5800	0.0039	1.6439	1.6439	0.212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e)	0.7000	0.9700	0.0300	0.0200	1.7200	1.1600	0.0043	1.7243	1.7243	0.2110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기관 (C-F)	0.7000	0.0600	0.0300	0.0200	0.8100	_	0.0049	0.8149	0.8149	0.2115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랩 (C-W)	0.7000	0.0000	0.0300	0.0200	0.7500	_	0.0049	0.7549	0.7549	0.2115
수수료선취-온라 인 (A-e)	0.7000	0.3500	0.0300	0.0200	1.1000	0.9800	0.0032	1.1032	1.1032	0.2139
수수료후취-온라 인슈퍼 (S)	0.7000	0.3500	0.0300	0.0200	1.1000	_	0.0000	1.1000	1.1000	0.2313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개인연금 (C-P)	0.7000	0.9000	0.0300	0.0200	1.6500	_	0.0000	1.6500	1.6500	0.2092
수수료선취-오프 라인-무권유저비 용 (AG)	0.7000	0.7300	0.0300	0.0200	1.4800	_	0.0049	1.4849	1.4849	0.2115
수수료미징구-온 라인-개인연금 (C-Pe)	0.7000	0.4500	0.0300	0.0200	1.2000	_	0.0000	1.2000	1.2000	0.2033
지급시기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사유발 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월/ 사유발생시	사유발 생시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단위 : 천원)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275	460	654	1,072	2,313
오프라인 (A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75	460	654	1,072	2,313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231	457	653	1,053	2,242
오프라인-보수체감 (C1,C2,C3,C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31	457	653	1,053	2,242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77	362	557	977	2,223
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77	362	557	977	2,2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84	171	263	461	1,050
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84	171	263	461	1,0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77	159	244	427	973
랩 (C-W)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7	159	244	427	973
스스크셔티 오리이 (^ ~)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62	280	404	672	1,465
수수료선취-온라인 (A-e)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2	280	404	672	1,46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13	231	355	623	1,418
(S)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3	231	355	623	1,4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69	347	533	935	2,127
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69	347	533	935	2,12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225	383	549	906	1,968
권유저비용 (AG)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25	383	549	906	1,9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23	252	388	680	1,547
인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3	252	388	680	1,547

[변경후1]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 (조르)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_	환매시
수수료선취-	가입제한 없음	전환수수료	_	전환시
오프라인 (A1)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한매수수료 한매수수료	=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	_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오프라인-보수	가입제한 없음	전환수수료	-	전환시
체감 (C1)		환매수수료	=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Class C1 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오프라인-보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전환수수료	-	전환시
체감 (C2)	투자자	환매수수료	=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Class C2 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오프라인-보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전환수수료	-	전환시
체감 (C3)	투자자	환매수수료	=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Class C3 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오프라인-보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전환수수료	-	전환시
체감 (C4)	투자자	환매수수료	=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 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오프라인-기관	주 4) 참조	전환수수료	-	전환시
(C-F)		환매수수료	=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수수료미징구-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오프라인-랩	계좌를 보유한 자	전환수수료	-	전환시
(C-M)		환매수수료	=	환매시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이내	매입시
수수료선취-	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온라인 (A-e)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전환수수료	_	전환시
		환매수수료		환매시
ᄉᄉᄅᇹᅱ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선취판매수수료		매입시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 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	후취판매수수료	내	환매시
(S)	외합니다.)가 개설한 온라 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전환수수료	-	전환시
	그 교레이드급에 최권으로	환매수수료	<u> </u>	환매시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선취판매수수료	_	매입시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후취판매수수료	_	환매시
수수료미징구-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전환수수료	_	전환시
오프라인-개인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판			[근단의
연금 (C-P)	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	환매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5% 이내	매입시
 수수료선취-오	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후취판매수수료	_	환매시
프라인-무권유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전환수수료	_	전환시
_ TE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환매수수료	=	환매시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스스르미지그_	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전환수수료	-	전환시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 금 (C-Pe)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 는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	환매시
수수료미징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	<u>선취판매수수료</u>	<u>=</u>	<u>매입시</u>
<u>오프라인-퇴직</u>	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	<u>후취판매수수료</u>	<u>=</u>	<u> 환매시</u>
<u>연금(C-P2(퇴</u>	좌, 퇴직연금사업자	<u>전환수수료</u>	<u>-</u>	<u>전환시</u>
<u> 직연금))</u>		<u>환매수수료</u>	<u> </u>	<u>환매시</u>
	<u>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u>	<u>선취판매수수료</u>	<u>=</u>	<u>매입시</u>
수수료미징구-	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u>후취판매수수료</u>		<u>환매시</u>
온라인-퇴직연	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u>전환수수료</u>	Н	<u>전환시</u>
<u>금(C-P2e(퇴</u> <u>직연금))</u>	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 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 <u>자</u>	<u>환매수수료</u>		<u>환매시</u>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u>선취판매수수료</u>	Н	매입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	<u>후취판매수수료</u>	П	<u>환매시</u>
	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	<u>전환수수료</u>	<u> </u>	<u>전환시</u>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 인연금(S-P)	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 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u>환매수수료</u>	<u>=</u>	환매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u>선취판매수수료</u>	<u>=</u>	<u>매입시</u>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	후취판매수수료	В	<u> 환매시</u>
수수료미징구-	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	<u>전환수수료</u>	<u>=</u>	전환시_
온라인슈퍼-퇴 <u>직연금(S-</u> P2(퇴직연금))	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u>환매수수료</u>	=	<u>환매시</u>
L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 (연간, %)								
클래스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 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 수 · 비용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	0.7000	0.9800	0.0300	0.0200	1.7300	1.3700	0.0049	1.7349	1.7349	0.2115

라인 (A1)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보수체감 (C1)	0.7000	1.5000	0.0300	0.0200	2.2500	1.5800	0.0032	2.2532	2.2532	0.2562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보수체감 (C2)	0.7000	1.3500	0.0300	0.0200	2.1000	1.5800	0.0000	2.1000	2.1000	0.2130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보수체감 (C3)	0.7000	0.9900	0.0300	0.0200	1.7400	1.5800	0.0000	1.7400	1.7400	0.2233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보수체감 (C4)	0.7000	0.8900	0.0300	0.0200	1.6400	1.5800	0.0039	1.6439	1.6439	0.212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e)	0.7000	0.9700	0.0300	0.0200	1.7200	1.1600	0.0043	1.7243	1.7243	0.2110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기관 (C-F)	0.7000	0.0600	0.0300	0.0200	0.8100	_	0.0049	0.8149	0.8149	0.2115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랩 (C-W)	0.7000	0.0000	0.0300	0.0200	0.7500	_	0.0049	0.7549	0.7549	0.2115
수수료선취-온라 인 (A-e)	0.7000	0.3500	0.0300	0.0200	1.1000	0.9800	0.0032	1.1032	1.1032	0.2139
수수료후취-온라 인슈퍼 (S)	0.7000	0.3500	0.0300	0.0200	1.1000	-	0.0000	1.1000	1.1000	0.2313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개인연금 (C-P)	0.7000	0.9000	0.0300	0.0200	1.6500	_	0.0000	1.6500	1.6500	0.2092
수수료선취-오프 라인-무권유저비 용 (AG)	0.7000	0.7300	0.0300	0.0200	1.4800	_	0.0049	1.4849	1.4849	0.2115
수수료미징구-온 라인-개인연금 (C-Pe)	0.7000	0.4500	0.0300	0.0200	1.2000	-	0.0000	1.2000	1.2000	0.2033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 금))	0.7000	0.8200	0.0300	0.0200	1.5700	Ξ	Ξ	1.5700	<u>1.5700</u>	=
수수료미징구-온 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 금))	0.7000	0.4100	0.0300	0.0200	1.1600	=	=	1.1600	1.1600	=
수수료미징구-온 라인슈퍼-개인연 금(S-P)	0.7000	0.2700	0.0300	0.0200	1.0200	Ξ	=	1.0200	1.0200	=
수수료미징구-온 라인슈퍼-퇴직연 금(S-P2(퇴직연 금))	0.7000	0.2600	0.0300	0.0200	1.0100	=	=	1.0100	1.0100	=
지급시기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_	사유발 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월/ 사유발생시	사유발 생시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단위 : 천원)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5	460	654	1,072	2,313
오프라인 (A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75	460	654	1,072	2,313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231	457	653	1,053	2,242

오프라인-보수체감 (C1,C2,C3,C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31	457	653	1,053	2,242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77	362	557	977	2,223
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7	362	557	977	2,2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84	171	263	461	1,050
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4	171	263	461	1,0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7	159	244	427	973
랩 (C-W)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7	159	244	427	97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2	280	404	672	1,465
- 구구표선위-근다한 (A-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2	280	404	672	1,46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3	231	355	623	1,418
(S)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3	231	355	623	1,4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9	347	533	935	2,127
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9	347	533	935	2,12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5	383	549	906	1,968
권유저비용 (AG)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25	383	549	906	1,9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3	252	388	680	1,547
인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3	252	388	680	1,5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61_	330	507	889	2,024
<u>퇴직연금(C-P2(퇴직연</u> <u>금))</u>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u>161</u>	330	507	889	2,024
<u>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u>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u>119</u>	244_	<u>375</u>	<u>657</u>	<u>1,495</u>
<u>직연금(C-P2e(퇴직연금))</u>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19	244	375	657	1,4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u>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u>	<u>105</u>	<u>214</u>	<u>330</u>	<u>578</u>	<u>1,315</u>
<u>-개인연금(S-P)</u>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u>105</u>	<u>214</u>	<u>330</u>	<u>578</u>	<u>1,315</u>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u>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u>	104	<u>212</u>	<u>326</u>	<u>572</u>	1,302
-퇴직연금(S-P2(퇴직연 금))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4	212	<u>326</u>	<u>572</u>	1,302

[변경전2]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Class C-P 및 Class C-Pe 가입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전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3.3.1 전 가입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면제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주 1)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Class C-P, Class C-Pe 및 Class S-P 가입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3.3.1 전 가입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면제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주 1)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라.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lass C-P2(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u>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u>-</u>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u>-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u>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u>「</u>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